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친 2003년 협약의 영향 개관¹⁾

팀 커티스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문화부장

서론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친 영향을 다루는 이 국제회의에 초대해 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이삼열 사무총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의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더욱 광범위한 맥락에서 조명해 준 중국 베이징 대학의 투웨이밍 교수에게도 감사드린다. 매우 흥미로운 기초연설로 한 나절 동안 진행되는 회의를 시작하기에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무형유산 보호를 목표로 하는 국제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그동안 협력하여 실시해 온 여러 활동에 대해 다소 기본 수준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협약은 처음부터 매우 야심 찬 프로그램이었다. 협약이 마련되기까지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무형유산과장을 지낸 아이카와 노리코 여사와 함께 일한 귀중한 개인 경험도 있었다.

개관

우선 간단히 언급해 본다. 현재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가입국은

1) 이 전사본은 유네스코 무형유산 1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서 팀 커티스가 구술로 발표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총 155개국이며, 여기에는 아태지역 44개국 중 30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유엔 조약 및 협약에 비추어 보면 이 협약의 비준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다.

이토록 많은 국가가 빠르게 가입했다는 사실은 이 협약이 전 세계 다수 지역이 공감하는 내용과 수많은 열망에 부응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기조연설에서 그 이유를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협약에 가입하고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협력하는 노력이 실제 어느 정도로 협약 이행의 성공과 무형유산의 보호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며, 이를 이해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형유산 보호 노력이 어느 정도로 구체화되고 이행되고 있는지도 끊임없이 자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태지역 내 태평양 섬 국가의 협약 비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이 지역 섬 국가들은 상당히 활발한 무형유산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협약의 틀 내에서는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해 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

아태지역 전 국가의 협약 가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최근의 협약 가입국은 2013년의 미크로네시아와 나우루에 이은 말레이시아다. 일부 국가는 잠시 후에 다루겠지만 협약 비준 단계에 있으나 이미 무형유산 보호 조치를 이행하기 시작했다.

등재

협약에 따른 등재에 관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지만 뒤이은 세션과 발표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간략히 다루기로 하겠다. 아태지역은 등재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계 등재유산의 절반가량이 아태지역의 무형유산이고, 특히 동아시아 국가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 수치는 이 지역이 등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3가지 목록

유네스코 무형유산목록에는 대표목록, 긴급보호목록, 모범사례 등 세 가지 목록이 있다. 무형유산 등재가 대표목록에 편중되어 있으나 등재된 종목 수를 살펴

보면 목록 간 균형이 이루어지는 추세다. 물론 처음에는 대표목록에 쏠림 현상이 있었으나 요즘은 국가들이 다소 균형 잡힌 접근법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목록의 등재를 본격화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대표목록이 인식 제고에 확실히 이바지했고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과연 유산 보호를 크게 증진하는 결과를 낳았는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확실하게 이르다.

내부감사실 보고서

최근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영향을 평가하는 유네스코 내부감사실(IOS)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유네스코 회원국은 문화 관련 협약의 전체 평가를 요청했고, 그 첫 번째 대상이 이 협약이었다. 여기서 다룰 내용의 상당수도 이 평가를 참고했다.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평가보고서는 현재 초안이지만 몇 주 이내에 집행이사회회의 채택을 거쳐 최종본이 될 것이다.²⁾

무형유산 보호 계획의 4대 중심축

평가에서는 국가 차원의 보호 계획 4대 중심축을 확인했다. 이 4대 중심축으로 달성하게 될 내용을 개괄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반드시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보호 활동은 아니다. 이따금 나에게 “무형유산은 어떻게 해야 최선인가”라고 묻는 사람이 더러 있다. 그러면 나는 농담조로 “협약, 유네스코, 보호를 위한 연구가 필요 없게 되는 상태가 바로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최선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행동이 필요한 만큼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정책과 지향점, 협약의 틀 내에서 활동 계획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협약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법과 제도 체계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 활동을 실행으로 옮기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협약에서 회원국의 의무로 강조하는 국가 무형유산 목록화 및 범위 규정을 들 수 있다. 그다음은 인식 제고다. 무형유산은 세대 간에 전승되고 사람이 수행하는 살아 있는 유산이어서 그에 대한 인식이 보호 활동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연구와 과학식 탐구가 있다.

2) 최종보고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제공된다. www.unesco.org/culture/ich/doc/src/ITH-13-8.COM-5.c-EN.doc

법과 제도 체계

2003년 협약과 이 협약의 결과 지난 10년 동안에 걸쳐 마련된 법 및 제도 절차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일부 국가에는 무형유산을 위한 정책이나 법 장치가 아예 없거나 협약 가입의 영향으로 입안 절차 중에 있었다. 기존의 법률 체계를 활용하는 국가도 있었다. 다수의 국가는 관련 법률과 정책 체계를 새롭게 마련했고, 일부는 기존 법률을 개정하기만 했다.

법률 체계 입안

예를 들어 부탄과 팔라우는 새로운 무형유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부탄은 문화생활 접근성을 국민 총행복지수(GNH)의 주요 요소로 규정함으로써 관심을 끈다. 이 규정은 문화생활 참여 및 접근을 사회 충족도의 주요 지표로 파악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결과물로 인식한다.

기존의 법률 체계 활용

기존의 법률 체계를 활용하는 국가의 경우 기록물 보관과 보전 또는 저작권 등의 쟁점이 다시 부각되곤 한다. 물론 무형유산의 보호에서 이러한 활동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록물 보관과 저작권 관점에서 무형유산을 정의하게 되면 중전에 표현되던 '살아 있는(lived)', '구현된(embodied)' 문화라는 특징이 생략될 수도 있다.

기존 체계의 상당 부분은 지식재산권 및 기록물 보관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의 기본 인식은 다른 무엇보다 전승자와 공동체 스스로 무형유산을 규정해야 한다.

기존의 법과 정책 개정

2003년 협약이 실시되기 이전에 무형유산 관련 기존 정책이 있던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네스코의 이 협약을 실제로 형성해 나갔다. 이들 국가는 협약에 맞게 자국의 법률을 개정하고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무형유산' 개념을 원주민의 인정(recognition)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문화재로 수정했다. 한국, 몽골, 북한은 모두 문화유산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러한 개정이 이 협약과 일치할 때도 있지만 때로

는 무형유산의 보호보다 보전을 말하는 등 불협화음을 낼 때도 있다. 그러나 협약은 최소한 행정부 내에서 무형유산을 검토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법과 정책 마련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새로운 정책과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라오스는 2005년에 만든 자국 정책과 법을 검토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 협약의 비준 이전에 통과된 국가유산법이 발효되었다. 2003년 협약의 영향으로 문화유산 이해를 대폭 수정한 베트남의 사례는 조만간 접할 수 있다.

중국은 무형유산의 역할이 강화된 새로운 문화유산 정책을 본격 실시했다. 이 정책은 무형유산을 통한 국가의 정신문명 활성화, 중국 내 소수민족의 다양성 인정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책은 조사, 대표사업 목록, 전승 및 보급 등 세 가지 체계로 실행된다. 2003년 협약이 중국의 국가문화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분명하다. 중국이 대단히 거대한 국가란 점을 고려하면 그 영향은 실제 상당하다.

세계 상황 개요

정기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의 75% 정도가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새로운 정책을 실시했다. 대다수 국가는 무형유산 보호를 기존의 다른 정책에 통합시켰고, 몇몇 국가(20%)만 독립된 정책을 마련했다. 독립된 정책에서 역점을 두는 부분은 인식 제고, 전승, 목록 작성, 우호 환경 조성, 무형유산의 기능 강화 및 문서화와 기록이다. 이 협약에서 요구하는 구성 내용으로는 무형유산 보호의 다면 양상을 보여 주기도 한다. 사실 각 부분에 할당되는 예산과 실제 실시되는 활동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면 확증은 없지만 문서화와 기록, 목록 작성 및 연구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호 활동의 실시와 관련된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해결해야 할 과제

드러난 문제는 무형유산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연관된 다른 부문의 정책에 아직 통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형유산은 농업정책, 교육정책, 어업 및 환경관

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무형유산이 이 모든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논의한 바 있다.

무형유산 정책은 문서화 및 기록을 강조하기보다 공동체 내 무형유산의 생명력 증진에 주력해야 한다. 생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다. 일부 국가는 이 부분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필리핀의 살아있는 전통 학교는 흥미로운 사례다.

비정부기구

아태지역에서 활동하는 44개 비정부기구(NGO)는 공인 자문 기구다. 이들은 공동체와 정부를 연결하고 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및 법률이 마련되도록 하는데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모니터링 활동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협약 체계 내에서 등재 신청을 위한 자문위원회와 별도로 이 협약 이행에서 NGO와 공동체, 당사국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현재 많은 풀뿌리 NGO와 협회가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네트워크 형성 및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향후 10년 동안 NGO와의 직접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협약 체계에 바람직하다.

국가목록

많은 국가에서 국가목록을 이미 작성했거나 작성하기 시작했다. 아태지역의 20개국은 목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목록 시스템을 수정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 베트남이 바로 협약 정신에 맞게 목록 절차를 대폭 수정하고 있는 국가다. 중앙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은 새로운 목록을 구축하고 있다. 협약의 이 측면이 인식 제고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며 국가 내 논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목록 작성에는 장단점이 있어서 목록을 다루는 토론 시간에 일본 문화유산부 아이카와 노리코와 함께 이 점에 관해 좀 더 다루도록 하겠다.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국제 차원에서의 목록 작성은 협약의 주 내용이다. 협약 비준을 하지 않은 다수의 국가에서도 목록 작성은 시작되었다. 이들 국가는 협약 가입 준비 단계에 있다. 이처럼 비준을 하지 않은 국가에서조차 협약이 국가 정책과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결해야 할 과제

목록 작성은 수많은 과제를 제시한다. 협약은 무형유산의 확인을 공동체가 주도하고 공동체에 기반을 둘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주제를 다룰 때의 실용 측면과 기관 내 관성에 따라 대부분 목록은 공동체보다 전문가와 정부 관료가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무형유산 간에 서열이 생기고 최고·최상의 문화 표현물로 지칭하는 일이 발생한다. 협약은 문화 표현의 서열화를 거부하기 위한 노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등재 제도이든 간에 일단 목록에 포함되거나 탈락하면 이에 따른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목록 등재를 위해 ‘진정성’과 ‘탁월한 가치’를 정의로 하고 있지만 협약은 ‘진정성’이란 개념을 분명히 거부한다. 동일한 것을 지칭하는 유형문화유산에서는 ‘진정성’이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사용법이 있지만 무형유산의 경우는 ‘진정성’에 함축성도 내포되어 있어 이 개념을 사용하면 무형유산의 실연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무형유산의 상업화나 민속화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있고, 일부 국가에서 이 같은 사례가 기록되기도 했다. 무형유산의 경제 가치는 협약에 언급되어 있지만 언제 이 경제 가치가 무형유산을 왜곡하게 되는 것일까? 이 쟁점은 평가보고서에서 다루고 있고, 여러 국가가 제기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인식 제고

협약이 미친 가장 큰 영향은 국제 차원에서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는 점이다. 본인이 전 유네스코 무형유산과장 아이카와 노리코와 함께 2000년에 열린 유네스코에 처음 참석했을 당시 이 분야에서 지난 6년간 활동하고 훗날 ‘무형문화유산’이라 불리는 활동을 해 왔음에도 무형유산에 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현재 이 개념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대학과 정책 담화에 수용된 개념이기도 하다. 이 자체로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문화유산이라 하면 건축물만 의미했지만 이제는 무형유산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로 인정된다. 이러한 성취는 과소평가되어선 안 된다. 대중매체와 TV에서 무형유산을 언급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공동체의 무형문화가 등재된 경우 그 과정에서 무형유산에 대한 활력과 애착심을 강화했다는 사

례도 다수 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몇 가지 부정적 영향이 그것이다. 특정 무형유산의 소유자를 규정하는 문제를 두고 국제 간 긴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에서 이런 긴장 상태가 목격된다. 누가 소유한 것이며 본래 누구의 소유였는가? 이 문제에 대한 협약의 입장은 명확하다. 기원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오늘날 해당 유산이 실연되고 있는 장소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협약의 결과 나타났으며, 이 갈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는 지역 협력 증진과 국제 보호 활동의 모범 사례 구축을 위한 방법으로 공유 유산을 분명히 권장한다. 우리도 회원국들에 공유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적극 협력할 것을 권장한다.

대학과 연구

이 지역 대학과 대학 네트워크 차원에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 무형유산 관련 대학 전공자 수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없는 상태다. 유형유산 보호를 위해 실시한 활동이 무형유산의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광범위한 과학·학문 지식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1972년 세계문화·자연유산 보호협약을 채택했을 때에는 이미 다년간의 학문이 축적된 상태였다. 더욱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이 협약으로 연구자와 학문 기관 간에 이러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무형유산 분야의 석·박사들이 배출될 것이고, 유산 보호 차원에서 실제 어떤 활동이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지식과 이해가 증진될 것이다.

주요 영향

협약이 미친 주요 영향은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점이다. 2003년 협약의 직접 결과로 국가 내 소수 민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증진된 사례가 여럿 있다. 과거 소수 민족 고유의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던 다수 국가에서 이러한 인식 제고는 매우 중요한 변화 양상이다. 무형유산으로 말미암아 소수 민족의 문화권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가했다.

향후 기회와 과제

향후 기회와 과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앞으로 10년 후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는가? 긴급보호목록을 당사국의 책무 이행에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협약이 사라질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그 저 일종의 최상의 미를 보여 주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길 바란다. 이 방향으로 좀 더 나아갈 필요가 있고,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도 있어 관계자들을 고무시키고 있다. NGO, 특히 전송자와 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서 상으로는 협약의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평가 결과를 보면 무형유산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 등 다른 분야와의 더욱 확실한 연계 구축과 국제·국가·지역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가 필요하다.

결론

마지막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런 지적에 낙심할 필요는 없다. 1972년 세계유산협약 운영 지침은 채택된 이래 40년간 이행되면서 수차례 수정을 겪었다. 1980년대 초 운영 과정과 현재를 비교해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고, 변화는 지속해서 겪어 왔다.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낙심하거나 놀랄 필요는 없다. 진행을 거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련의 새로운 과제를 고려할 때 초기 10년간 협약이 일구어 낸 성과는 칭찬할 만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높아졌다. 새로운 지향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사실도 실제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과정은 계속될 것이다.

이 발표를 경청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